

#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2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8.  
제 출 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2020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계획은  
    건물 취득 1건 1동 13,213.27㎡ 5,800,000천원  
    - 평창돔(사유재산) 기부채납 취득 : 1동 13,213.27㎡ 5,800,000천원

## 3. 붙임자료

- 가.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총괄표) 1부
- 나. 2020년 제3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
- 다.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(부서별) 1부
- 라. 관계법령 발췌 1부

[붙임 가]

##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총괄표)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구 분		변경전			변경후			증△감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합계	토지	10	170,175	11,653,899	10	170,175	11,653,899				
	건물	11	18,562.89	31,708,804	12	31,776.16	37,508,804	1	13,213.27	5,800,000	
	기타	1	100종	691,036	1	100종	691,036				
취 득	매 입	토지	10	170,175	11,653,899	10	170,175	11,653,899			
		건물	11	18,562.89	31,708,804	11	18,562.89	31,708,804			
		기타	1	100종	691,036	1	100종	691,036			
	교 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1	13,213.27	5,800,000	1	13,213.27	5,800,000
		기타									
합계	토지	1	87,643	1,145,416	1	87,643	1,145,416				
	건물	1	4,144.4	2,100,000	1	4,144.4	2,100,000				
	기타										
처 분	매 각	토지	1	87,643	1,145,416	1	87,643	1,145,416			
		건물	1	4,144.4	2,100,000	1	4,144.4	2,100,000			
		기타									
	교 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[붙임 나]

## 2020년도 제3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예정가격	취득 처분 시기	취득처분 사유	비 고 (소유자)
	소재	소재지	수량				
건물취득 합계 (1건 1동)			13,213.27	5,800,000			
소계 (1건 1동)			13,213.27	5,800,000			
1	대	대관령면 수하리 142-3	13,213.27	5,800,000	2020 하반기	기부채납	(주)에이치 제이매그 놀리아 용평호텔 앤리조트

※ 평창돔 기부채납

[붙임 다]

##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부서	쪽
1. 평창동(사유재산) 기부채납 취득	교육체육과	6

- 가장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평가받는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」의 시발점이 된 「1999 강원동계아시안게임」의 주 무대였던 『평창돔 경기장』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개선 필요
- 평창 특색에 맞는 대규모 문화행사 및 국제행사\*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,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.  
\*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, 2024 강원유스올림픽, 동계아시안게임(남북공동개최) 유치

## □ 개요

- 기부자 : (주)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(대관령면 용산리 130)
- 기부물건 : 평창돔 건물 1동(지하1층~지상3층) 13,213.27㎡(토지제외)

구분	구조	용도	위치	시가표준액	비고
건물	철근콘크리트조	운동시설 (실내빙상경기장)	대관령면 수하리 142-3	58억원	

※ 평창돔 건물만 기부채납하며 건물 부지와 주변부지는 무상임대

- 추진배경
  - 메가이벤트 개최를 위한 본 시설의 노후로 개·보수 필요
  - ⇒ 용평리조트로부터 기부채납 의사 타진

## □ 추진사항

- 노후된 본 시설 개·보수 협의-용평리조트 업무협의 2회
- 평창돔 기부채납 의사에 따른 업무협의 2회
-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 : 2020. 7월

## □ 검토사항(필요성)

- 올림픽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동계스포츠의 경우 메인 행사(개회식 및 폐회식)를 위해선 돔 시설이 필요한데 관내에는 평창돔이 유일한 상황 ⇒ 시설의 노후로 리모델링 필요

- 기업의 성과와 이윤면에서 본 시설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은 담보 상태이며, 민간 자산에 대한 정부(지자체) 예산 지원은 불가한 상황
- 성공개최한 올림픽 주 개최지로서의 지역주민 자긍심과 위상제고, 평화 올림픽 정신 계승 등 본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사용의 필요성 대두
- 관리와 사용 주체가 굳이 되어 적기에 체육, 문화, 전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고자 함
- 향후 평창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다목적 훈련장소 활용 및 타국의 동계스포츠 훈련장 유치, 올림픽 유산시설과 연계한 관광·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## □ 취득(기부채납)대상 재산내역

- 건물(1동)

(단위 : m<sup>2</sup>, 억원)

소재지	번지	층별	용도 (구조)	연면적	시 가 표준액	취득 시기	소유자
계				13,213.27			
대관령면 수하리	142- 3	지하1	기계실,전기실,공조실 (철골조/철근콘크리트조)	1,853.14	58	2020년 (하반기)	(주)에이치제이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 조트
		1층	경기장, 사무실 (철골조/철근콘크리트조)	6,520.31			
		2층	관람석, 화장실 (철골조/철근콘크리트조)	2,314.35			
		3층	관람석 (철골조/철근콘크리트조)	2,450.44			
		지하1	가스저장고 (철근콘크리트조)	47.15			
		1층	기화기실 (철근콘크리트조)	27.88			

## □ 향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: 2020. 9월
- 소유권 이전 등기축탁 : 2020. 10월
-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등 확보 : 2020. 12월
- 시설개보수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: 2021. 3월
- 개보수사업 완료 및 시설활용 : 2021. 7월~

## □ 시설보수 및 관리방안

### ○ 시설보수

- 소요사업비 : 60억원(국비 30, 지방비 30)
- 예산확보대책 : 국비 확보 노력(문화체육관광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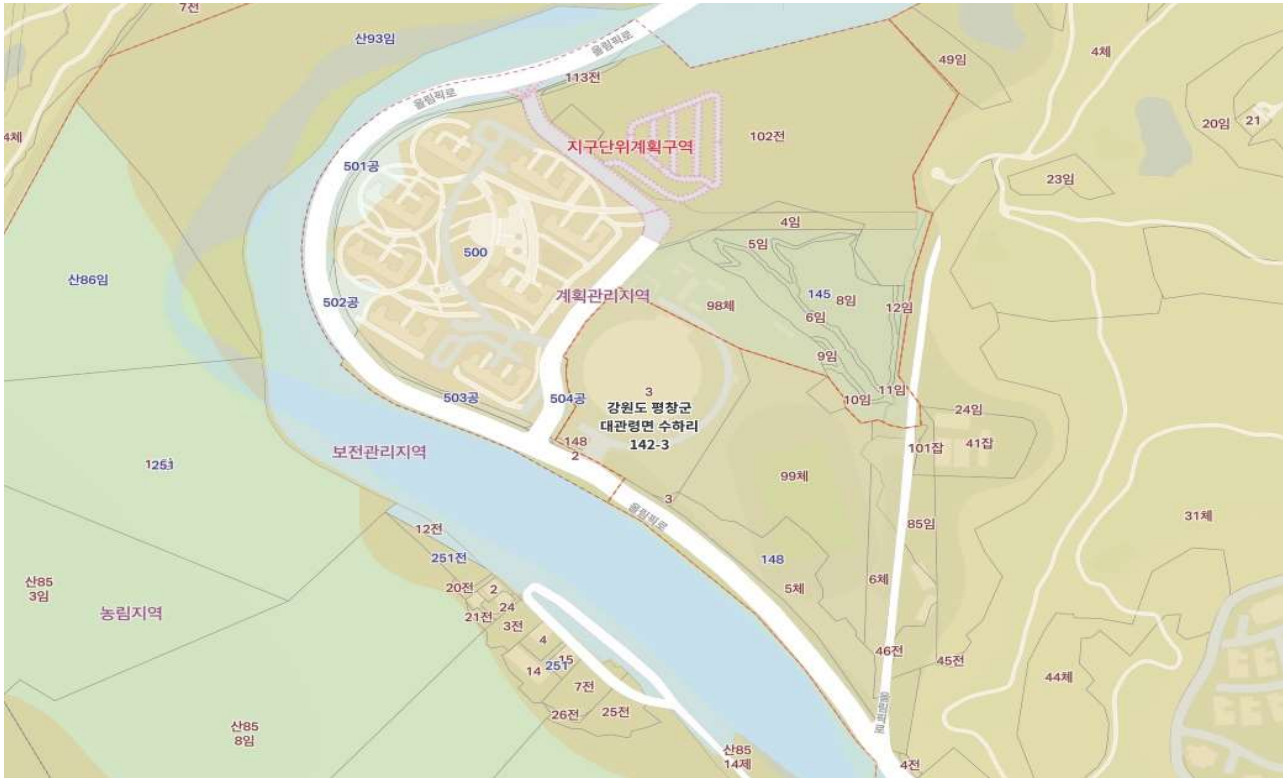
### ○ 관리방안

- 관리주체 : 평창군(시설관리과)
- 소요사업비 : 1억원 / 연
- 소요인력 : 2명(기술직, 기간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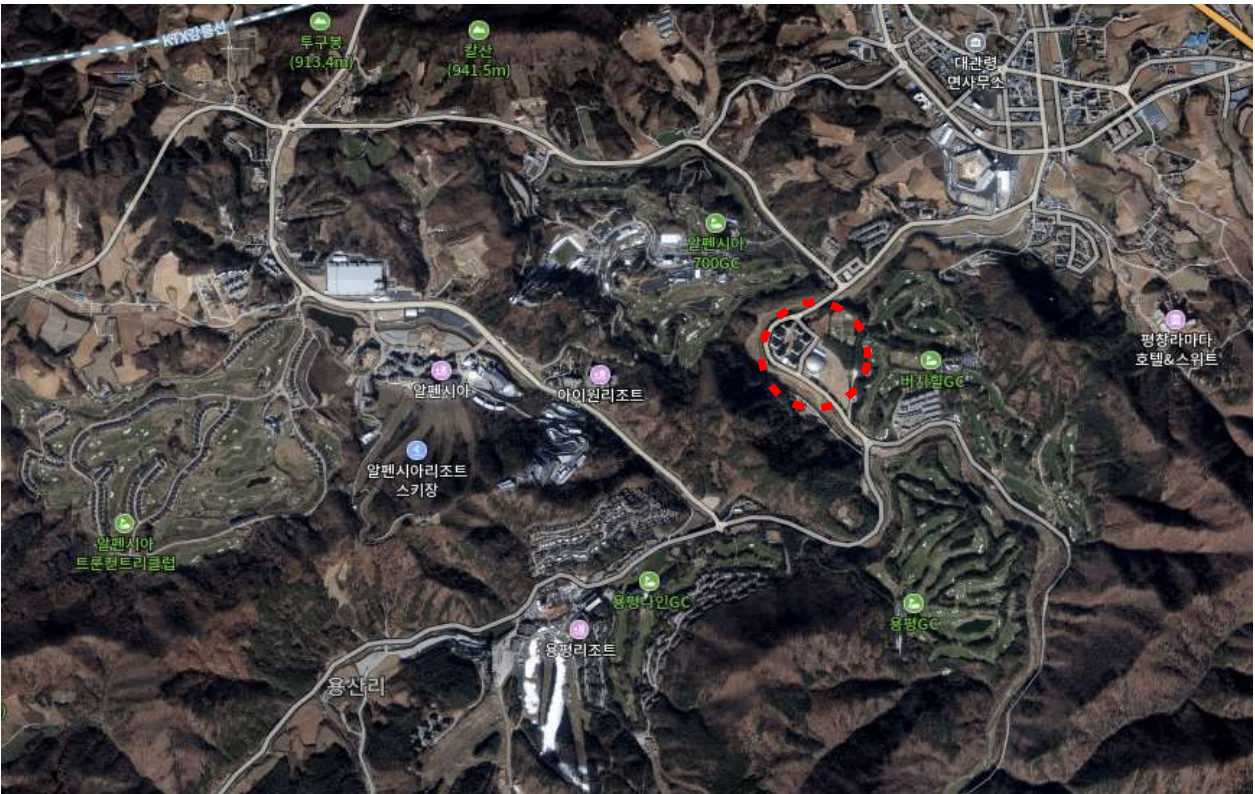
## □ 전경



## □ 지적도



## □ 위치도





## 〈관계법령 발췌〉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“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**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“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## 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08.10.17>
3. 법 제11조 및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4. 삭제 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10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
  2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·처분
  3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·처분
 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
- 가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- 나.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
- 다.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(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)시 취득·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